국토교통부예규 제 155 호

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 일부개정안

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1.2 적용 중 “항공법 제75조 및 제111조”를 “「공항시설법」 제24조”로 한다.

부 칙 <2017. 4. 17.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